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포함》

2022. 11.

국 토 교 통 부
철 도 건 설 과

I. 과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작성지침

1. 작성지침 성격

본 지침은 철도건설과에서 시행 예정인 재해영향성검토 입찰 참가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고시금액미만의 용역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작성 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임.

2.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대상 사업

용역명	용역사업 주요내용	용역금액(원)	용역예정 기간(개월)	비고
호남선 고속화(가수완-논산) 건설사업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1식	37,000,000	12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 등록한 자이며,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낙찰자 선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 '18.1.4.)」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4. 과업내용 : 별도의 “(용역설계서)과업지시서”에 의함

II.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철도건설과에서 시행 예정인 재해영향성검토용역 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이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방법

재해영향성검토용역 낙찰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2조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 '18.1.4.)」에 따라 우리 과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항은 Ⅲ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평가의 기본 원칙

- 가.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는 이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기준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956호, '18.1.4.)」에 의한다.
- 나.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다. 적격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제출 자료의 사실입증을 위해 관련협의 및 소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으며 입증자료가 없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라. 평가자료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평가대상)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

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우리 과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다.

바. 적격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사.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 중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명 및 사업 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 계약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적격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실시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1) 평가기준 또는 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이의사항 및 의문발생시
-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 3) 기타 평가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6. 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이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갑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기재 되어있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르며, 유사용역수행실적, 경영상태, 업무중첩도,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적격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1, 부분1)에 편철하여 제출해야하며,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Ⅲ.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일반사항

1) 참여자격 :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사실이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구 분	기술자격 요건		필수 교육 이수자	비고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재해영향성 검토	특급	고급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2) 경력 및 실적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주요경력/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발주처, 사업명, 직무분야, 해당 전문분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처, 사업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사기업(私企業)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평가대상 사업은 전체 준공한 용역사업으로 한정한다.**(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및 차수준공 용역은 제외)

6) 평가대상 기술인

순 번	용 역	평가대상기술인(인)			비 고
		계	책 임	분 야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1	재해영향성검토	2	1	1	책임기술인과 분야기술인 분야 중복 불가

나.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제4조 관련)의 기준에 따라 자격은 직무 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며, 등급은 전문분야에 대하여 평가한다.

구 분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비고
인 원 수			각 1인	
참여분야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자격	직무분야	토목	사업책임 : 특급이상 분야별책임 : 고급이상	
등급	전문분야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배점표에 따라 차등평가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 일수를 차등 계산

용역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방재 관리대책업무 및 용역	· 용역수행 경력 ·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100%
· 설계*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 용역수행 경력 ·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80%

*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이하 “국토교통부”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한 후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며 평가경력 연수(年數)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기준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적 일수를 차등 계산

용역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방재 관리대책업무 및 용역	· 용역수행 경력 ·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100%
· 설계*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 용역수행 경력 ·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80%

*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이하 “국토교통부”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3) 각각의 실적일수를 합산한 후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며 평가실적 월수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

2. 참여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가. 유사용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 방재관리대책업무(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계획 수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우수 유출저감대책 수립,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비상대처계획 수립) 중 건당 전체 준공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공고일 기준 전체분에 대하여 준공되지 않은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유사용역의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사기업(私企業)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경영상태 평가(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4. 용역업무 중복도

- 가. 용역업무 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0일이상인 모든 용역(비상주 감리 제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인 사업 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각 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에 따라 아래의 배점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잔여과업 중 공동도급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반영하여 기간을 산정한다. ※ 1개월은 30일로 계산

1년(12개월)이하	1년(12개월)초과 2년(24개월)이하	2년(24개월)초과 3년(36개월)이하	3년(36개월)초과
1건	2건	3건	4건

- 나. 업무 중복 내용은 참여 기술인이 참여 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술인의 업무 중복도 평가점수는 최저 점수로 처리한다.

5. 신용도

-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용역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배점의 10%씩 감점한다.(1월 이상 30일 이하 : -0.2, 31일 이상 60일 이하 : -0.4, ...)

2)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90일)마다 10%씩 감점한다.(1일 이상 90일 이하 : -0.2, 91일 이상 180일 이하 : -0.4, ...)

6. 재해영향성검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가기준				
계		100					
참여기술인	소계	50	○ 자격 -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 사업책임기술인	25					
	·기술인등급 (수자원 개발)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용역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이상	84개월이상	84개월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 사업 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기술인등급 (토질 및 지질)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용역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용역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용역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용역업무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인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IV.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1. 용역개요

- 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제본순서)

-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1) 표지[서식 1]
- 2) 적격심사신청서[서식 2]
-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서식 3]
-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 4)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서식 4]
- 5) 참여기술인 총괄[서식 5]
 - *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첨부(공고일 기준)
- 6)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서식 6]
- 7) 참여기술인(사책, 분책, 분참) 경력증명서
- 8)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7]
- 9) 참여기술인 교육수료증
- 10) 업체의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5천 이상)[서식 8]
- 11)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 13) 경영상태 실적(5천 미만)[서식 9]
- 14) 기업경영평가분석자료 등 증빙서류
- 15)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서식 10]
- 16)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 17)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서식 11]
- 18)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 산출근거[서식 12]

* 경력 및 실적증명서 등 근거자료는 각 서식 바로 뒤에 첨부토록 한다.

** 첨부서류 서식5는 엑셀 전산파일(CD 또는 USB 등)로 반드시 제출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분 1부), 규격 : A4(210cm × 296cm), 좌철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과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하며, 작성안내서 상 각 항목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불인정한다.

나. 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용역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의 처리한다.

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서식 1]

국 철	토 도	교 건	통 설	부 과
--------	--------	--------	--------	--------

관 리 번 호	
------------------	--

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자료
(용 역 명)

2022. 0.

○ ○ ○ ○(주)

담당자	직장전화번호	긴급연락처	팩스(FAX)번호
○○○	○○○-○○○-○○○○	○○○-○○○-○○○○	○○○-○○○-○○○○

적격심사신청서

- 용역명 :
- 발주기관 :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
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소 :
회사명 : (TEL.)
대표자 : (인)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장 귀하

[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공고번호	
입찰일시	
용역명	
용역기간	
수요기관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 심사대상입찰자

업체명	(전화)
대표자	
업종구분	건설사업관리(), 설계(), 기타()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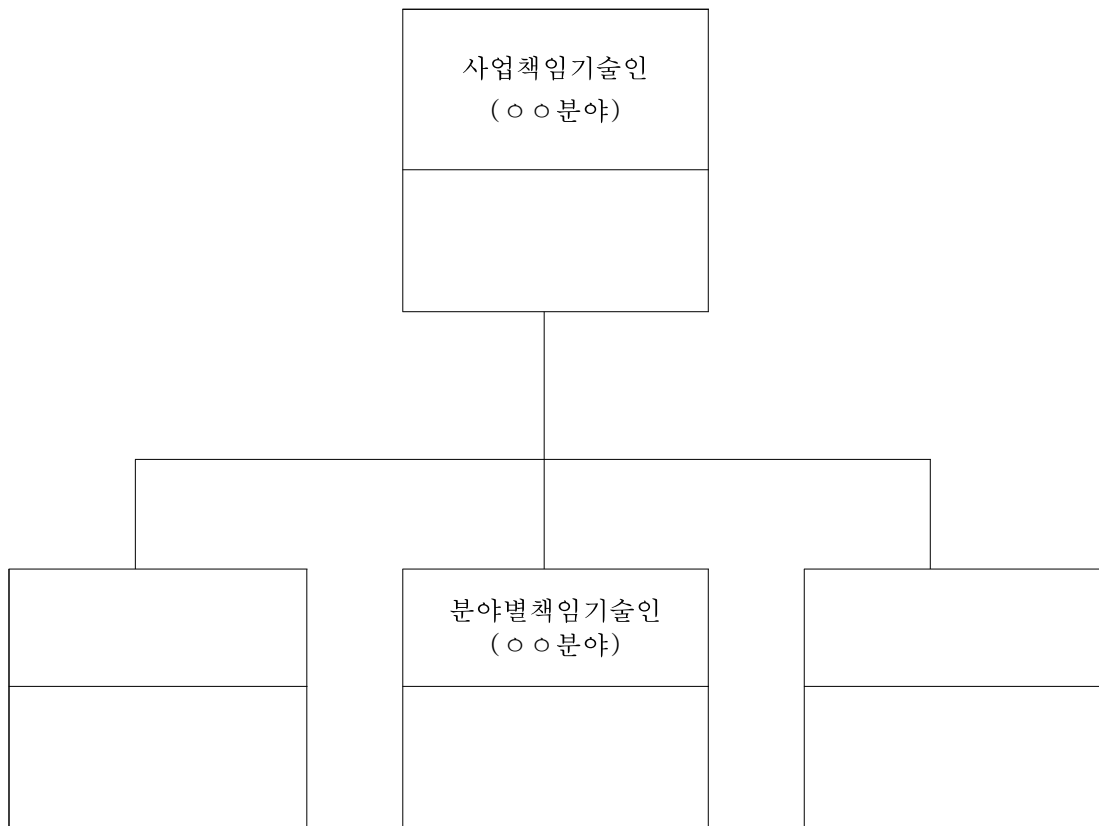
구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에 의한 자기평점 근거 첨부할 것.

※ 수행능력 평점산식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 번호	자 격 내 용			학 력 내 용		소 속 회 사	비 고
					자 격 명	취 득 일	번 호	최 중 학 력	취 득 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분야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분야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

※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 1인, 분야책임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 명		소속회사		주민번호 (연령)	(만 세)
기술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자격증 (분야및종류)			금 회 참여분야		
경 력	1059일÷365일= 2.9년		실 적	840일÷30일= 28개월	
자격정지	개월(“해당없음”은 표시)				

2. 경력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 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청	직무 분야	전문 분야	담당 업무	해당 페이 지
			착수	준공	인정일 (A)	인정율 (%) (B)	인정 기간 (C)					
	산정결과						2.3년	1년=365일				
계	권						1059	1059/365				
1	00 재해영향성검 토용역	수자 원	2008. 01.01	2009. 12.31	365	100%	365	XX 국도	토목	수자원 개발		p.171
2	00소하천 실시설계용역	수자 원	2009. 01.01	2010. 06.30	182	80%	145.6	00시	토목	수자원 개발		p.172
3	00지방하천 실시설계용역	수자 원	2010. 01.01	2011. 12.31	184	60%	110.4	XX 국도	토목	수자원 개발		p.173
4	00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수자 원	2011. 01.01	2012. 06.30	365	60%	219	00도	토목	수자원 개발		p.174

3. 실적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 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청	직무 분야	전문 분야	담당 업무	해당 페이 지
			착수	준공	인정일 (A)	인정율 (%) (B)	인정 기간 (C)					
	산정결과						2.3년	1년=365일				
계	전						1059	1059/365				
1	00 재해영향성검 토용역	토질 지질	2008. 01.01	2009. 12.31	365	100%	365	XX 국도	토목	토질 지질		p.171
2	00소하천 실시설계용역	토질 지질	2009. 01.01	2010. 06.30	182	80%	145.6	00시	토목	토질 지질		p.172
3	00지방하천 실시설계용역	토질 지질	2010. 01.01	2011. 12.31	184	60%	110.4	XX 국도	토목	토질 지질		p.173
4	00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토질 지질	2011. 01.01	2012. 06.30	365	60%	219	00도	토목	토질 지질		p.174

5.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분야	성명			시점	종점	
사업책임 기술인				2010. 01.01	2011. 12.31	(주)
분야별책임 기술인						
점 수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건설사업관리() 기타()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발급부서 :				담당자 :		

※ 작성요령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연번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발주처	실적		지분율	적용 실적		비고 (공동 도급 자명, 총준 공금 액)	해당 페이 지
			착수	준공		건수 (A)	준공금 액 (백만원) (B)	% (C)	건수 (A*C)	금액 (백만원) (B*C)		
	산정결과											
계						4	250		3.1	240		
1	00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2008. 01.01	2009. 12.31	XX 국도	1	100	100%	1	100	100	p171
2	00소하천 실시설계용역		2009. 01.01	2010. 06.30	00시	1	70	80%	0.8	56		p171
3	00지방하천 실시설계용역		2010. 01.01	2011. 12.31	XX 국도	1	60	60%	0.6	36		p171
4	00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2011. 01.01	2012. 06.30	00도	1	80	60%	0.8	48		p171

※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함

※ 과업개요 란에는 용역 시설물 등을 정확히 기재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하도급은 불인정

※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국가 및 공공기관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발주청"을 말함

[서식 9]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경영실적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 증빙서류 첨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 사본)

※ 합계(평균)는 총 금액에 대한 연간 평균수치임.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

※ 반드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하로 평가함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신용도 평가]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기간			사유	관계법령	처분청	비고
			시점	종점	환산 (월)				
용역 업자			2010. 06.01	2010. 08.31	3				
	계								
참여 기술인									
	계								

- ※ 업체 및 평가대상 기술인은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 ※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참여기술인 업무 중첩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건						

-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장기계속 등)을 기재
- ※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3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모두 기재
- ※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점수는 최저점수로 처리
- ※ 공동도급으로 수행중인 경우 지분율이 표기된 발주청 실적증명 별도 첨부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 기준	평 가 기 준					평가 점수	산출근거	
계		100								
참여 기술인	소계	50	○ 자격 -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15	(예시)	
	- 사업책임기술인	25								
	·기술인등급 (토목 전문분야)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	고급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6	0,000*1+000*0.8+000*0.6=4,120일 4,120/365=11.3년	
			8	6	4	2	0			
	·용역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이상	84개월이상	84개월미만	4	2,872/30=95.7개월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 토목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기술인등급 (토목 전문분야)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용역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용역수행 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용역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 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인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가.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나.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다.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경력외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않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경력외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
- 마. 자기평가서 내 공란은 파란색으로 채우시기 바람.